##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박주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0085 발의연월일: 2025. 4. 24.

발 의 자: 박주민·김한규·서영석

이용우 • 진선미 • 김선민

김우영 · 서미화 · 남인순

정성호 • 박지원 의원

(11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시간과 연속근무 시간은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악화시킬뿐만 아니라 전공의가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의 질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.

이러한 이유로 전공의의 주당 수련시간 및 연속 수련시간의 상한을 종전보다 낮게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2026년 2월 21일에 시행 예정임. 그러나 전공의의 적정 수련시간을 담 보하기 위해서는 수련시간 상한을 종전과 같이 규정한 채 하위법령에 위임하기보다는 법률에 그 상한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.

또한,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 등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공의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전공의 수련환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전공의 대

표자의 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전공의의 주당 수련시간 상한을 60시간으로, 연속 수련시간 상한을 24시간으로 법률로 명시하고, 전공의 대표자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전체위원 중 과반수가 되도록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는 한편, 수련계약 체결 시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는 등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하고 환자에게 질적으로 향상된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(안 제7조, 제10조 및 제15조 등).

###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국가는 제12조에 따른 지도전문의의 인건비 등 전공의 수련에 필요한 비용을 수련병원등에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제1항 본문 중 "80시간"을 "60시간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본 문 중 "36시간"을 "24시간"으로 하며,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.

법률 제20330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4주의 기간을 평균하여 1주일에 60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교육적 목적을 위하여 1주일에 8시간 연장이 가능하다.
- ②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연속하여 24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"제1항"을 "제1항 및 제2항"으로 한다.

②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전공의에 대한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에 관하여는 「근로기준법」 제70조제2항 및 제3항을 따른다.

제9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9. 전공의 1인당 담당 적정 환자 수 제1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 - ④ 수련병원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련계약 체결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- 1. 기본임금(임금총액에서 연장근로·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의 사유로 가산하여 지급하는 임금 등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
    - 가. 「근로기준법」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·야간근로 및 휴일근 로에 대하여 가산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임금으로 지 급하는 내용의 계약
    - 나. 「근로기준법」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 니한 데 따른 보상금액을 포함하여 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
  - 2.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 「근로기준법」 제56조에 따라 가산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실제 근로한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액으로

하여 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

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제19조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 - 1.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수련병원등의 장
  - 2.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련규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수련병원등 의 장
  - 3.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
  - 4.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폭행등 예방 및 대응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
  - 5. 제1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수런병원등의 장
  - 6.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이동수련 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
  -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7조에 따른 의무위반에 대하여 환자 보호, 응급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는 그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.

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0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 - 1.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9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수련규칙(제7 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련시간에 관한 수련규칙 은 제외한다)을 준수하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
  - 2. 제14조제2항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수련병원등의 장
  - ②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사·검사를 거부 ·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 -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 - 1.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련계약서 1부를 전공의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
  - 제1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지도전문의에게 필요한 정기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
  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·징수한다.

#### 부 칙

-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적용례)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부 터 적용한다.
- 제3조(벌칙 및 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3조(국가의 지원) ①・② (생	제3조(국가의 지원) ①・② (현행		
략)	과 같음)		
<u>&lt;신 설&gt;</u>	③ 국가는 제12조에 따른 지도		
	전문의의 인건비 등 전공의 수		
	련에 필요한 비용을 수련병원		
	등에 지원할 수 있다.		
제7조(수련시간 등) ① 수련병원	제7조(수련시간 등) ①		
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4주의			
기간을 평균하여 1주일에 <u>80시</u>	<u>60시</u>		
<u>간</u> 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하여	<u>간</u>		
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교육적			
목적을 위하여 1주일에 8시간			
연장이 가능하다.			
② 수런병원등의 장은 전공의	2		
에게 연속하여 <u>36시간</u> 을 초과	<u>24시간</u>		
하여 수런하게 하여서는 아니			
된다. <u>다만, 응급상황이 발생한</u>	<u>&lt;단서 삭제&gt;</u>		
경우에는 연속하여 40시간까지			
수런하도록 할 수 있다.			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		
법률 제20330호 전공의의 수련환경	법률 제20330호 전공의의 수련환경		
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	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		
일부개정법률	일부개정법률		

제7조(수련시간 등) ① 수련병원 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4주의 기간을 평균하여 1주일에 80시 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을 초과 하여 수련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교육적 목적을 위 하여 1주일에 8시간 연장이 가 능하다.

②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 에게 연속하여 36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하는 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 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속하여 40시간 이내의 범위 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간까지 수련하도록 할 수 있 다.

③ (생략)

략)

<신 설>

제7조(수련시간 등) ① 수련병원 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4주의 기간을 평균하여 1주일에 60시 간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하여 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교육적 목적을 위하여 1주일에 8시간 <u>연장이 가</u>능하다.

②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 에게 연속하여 24시간을 초과 하여 수련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8조(임산부의 보호) ① (생 제8조(임산부의 보호) ① (현행과 같음)

> ②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전공의에 대한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에 관하여는 「근로기준법」 제70

- ② 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수련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9조(수련규칙의 작성 등) ① 보 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전공의 수련 및 지도·감독에 관한 규칙(이하 "수련규칙"이라 한다)의 표준안 을 작성하여 수련병원등의 장 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  - 1. ~ 8. (생 략) <u><신 설></u>
  - <u>9.</u> (생 략) ② ~ ④ (생 략)
- 제10조(수련계약 등) ① ~ ③ (생 략)

<신 설>

조제2항 및 제3항을 따른다.
③ 제1항 및 제2항
제9조(수련규칙의 작성 등) ①
1 0 (청체기 가이)
1. ~ 8. (현행과 같음)
9. 전공의 1인당 담당 적정 환
<u>자수</u>
<u>10.</u> (현행 제9호와 같음)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10조(수련계약 등) ① ~ ③
(현행과 같음)
④ 수련병원등의 장은 제1항에
따른 수련계약 체결 시 다음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여서는
<u>아니 된다.</u>
1. 기본임금(임금총액에서 연장
그근 . 아가그근 및 호이그근

는 임금 등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계약

등의 사유로 가산하여 지급하

가. 「근로기준법」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 •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 산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임금으로 지급하 는 내용의 계약

나. 「근로기준법」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를 사 용하지 아니한 데 따른 보 상금액을 포함하여 임금으 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

2.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 「근로기준법」 제56조에 따 라 가산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실제 근로한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액으로 하여 임금으로 지 급하는 내용의 계약

- ② (현행과 같음)
- (3) -----

제15조(수련환경평가위원회) ① · 제15조(수련환경평가위원회) ① ·

- ② (생 략)
-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

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 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 촉하고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<후단 신설>

- 1. ~ 6. (생 략) ④ ~ ⑥ (생 략)
- 제19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| 제19조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 - 1.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수련병원 등의 장
  - 2.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련 규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수련 병원등의 장
  - 3.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명령 에 따르지 아니한 수련병원등 의 장
  - 4.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폭행등 예방 및 대응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한 수련병원등 의 장
  - 5. 제1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

-----. 이 경우 제3호에 해당 하는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 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.

- 1. ~ 6. (현행과 같음)
- ④ ~ ⑥ (현행과 같음)
-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1.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수련병원 등의 장
- 2.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련 규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수련 병원등의 장
- 3.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명령 에 따르지 아니한 수련병원등 의 장
- 4.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폭행등 예방 및 대응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한 수련병원등 의 장
- 5. 제1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또는

- 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 업무정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 한 수련병원등의 장
- 6.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이동수련 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1.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9 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수련 규칙(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 지의 규정에 따른 수련시간에 관한 수련규칙은 제외한다)을 준수하지 아니한 수련병원등 의 장
- 2. 제14조제2항의 자료를 제출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 성하여 제출한 수련병원등의 장
- ③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사 · 검사를 거부 ·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

- 한 수련병원등의 장
- 6.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이동수런 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
-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7조에 따른 의무위반에 대하 여 환자보호, 응급상황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정당성이 인 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감 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.

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- 1.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런계약서 1부를 전공의에게교부하지 아니한 수런병원등의 장
- 2. 제1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지도전문의에게 필요한 정기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수 런병원등의 장
- ⑤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7조에 따른 의무위반에 대하 여 환자보호, 응급상황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정당성이 인 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감 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.
-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·징수한다.

 제20조(과태료)
 ① 다음 각 호의

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

 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

 부과한다.

1.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9 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수련

규칙(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 지의 규정에 따른 수련시간에 관한 수련규칙은 제외한다)을 준수하지 아니한 수련병원등 의 장

- 2. 제14조제2항의 자료를 제출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 성하여 제출한 수런병원등의 <u>장</u>
- ②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사·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게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1.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

   런계약서 1부를 전공의에게

   교부하지 아니한 수런병원등

   의 장
- 2. 제1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지도전문의에게 필요한 정기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수 련병원등의 장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

 정에
 따른
 과태료는
 대통령령

 으로
 정하는
 바에
 따라
 보건복

 지부장관이
 부과・징수한다.